

# 關稅同盟의 生產效果와 消費效果

朴 泰 夏\*

- I. 序 論
- II. 貿易創出과 貿易轉換
- III. 生產效果—生產國間의 代替—

- IV. 消費效果—財貨間의 代替—
- V. 補 論

## I. 序 論

2次大戰後 舊殖民地體制가 와해되면서 先進國들은 生產力의 擴充과 市場의 擴大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經濟統合을 진지하게 생각해 온 바 있다. 특히 1950年代의 EEC 發足 前後로 이어한 經濟統合運動은 戰後 世界經濟體制의 새로운 特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60~70年代에 이르러서는 經濟統合은 先進國들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들 사이에서도 經濟開發協力의 具體的手段으로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世界經濟의 地域化가 普遍化되고 있는狀況에 처해 있다.

經濟統合은 大體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흔히 그 代表的 형태로 거론되는 것은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經濟同盟 등인데 經濟를 통이 對外共通政策을 실시하는 것으로서는 關稅同盟이 그 始發點이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關稅同盟의 經濟的 效果에 관하여는 많은 論難이 있었으며 世界政治 環境은 純粹한 經濟效果分析을 더욱 困難하게 하는 수가 있었다. 특히 關稅同盟 理論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對外差別政策의 經濟效果를 分析하는 一般理論으로까지 擴大되고 있다.

本稿는 關稅同盟 理論 가운데서 核心的인 部分인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를 概觀하고 生產地의 代替와 財貨間의 代替에 따른 生產效果와 消費效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關稅同盟은 이 밖에도 雇傭, 生產方法, 投資, 所得, 國際收支, 換時勢 등 여러 部門에 걸쳐 效果를 미치게 되는데 이들 問題는 상당히 많은 分量의 實證的 研究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論議에서 除外하였다.

\* 法經大學 貿易科 副教授

生產效果와 消費效果에 置重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靜態的 分析과 長期動態的 分析을 함께 必要로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다만 靜態分析에만 局限하였으며, 主要爭點의 浮刻과 그 調整에 論議의 焦點을 두기로 하였다.

## II. 貿易創出과 貿易轉換

關稅同盟을 結成한 뒤 購入財貨의 生產國의 變動을 고려할 때, 關稅要素를 差減한 후의 生產費用(貨幣費用)이 더 낮은 쪽으로 그 財貨購入을 轉換시키는가 아니면 그 貨幣費用이 더 높은 쪽으로 購買地域을 轉換시키는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여 그에 대한 回答을 시도한 사람 들 가운데 그 代表의인 사람으로 혼히 Jacob Viner를 들고 있다. Viner는 關稅同盟의 結成이 가져오는 두 개의 다른 效果를 구분하고 있다.<sup>1)</sup>

첫째로 關稅同盟의 한 加盟國이 從前에는 自國의 生產費用이, 어느 다른 나라의 生產費에다 關稅額을 포함한 金額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혀 輸入을 하지 않다가 關稅同盟 結成後에는 當該 關稅同盟의 다른 加盟國으로부터 신규로 어떤 商品을 輸入하게 되는 수가 있다. 두 加盟國間의 生產地 移動은 高生產費地點에서 低生產費地點으로의 移動이기 때문에, 全世界的으로 自由貿易을 行使한다면 生產費가 더 낮아질 수 있는 餘地가 많다는점에서, 이는 自由貿易主唱者들로서는 옳은 方向이라고 찬성하는 變化이다.

둘째로 關稅同盟의 한 加盟國이 從前에는 關稅를 支拂하고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供給可能한 域外 第3國으로부터 輸入하다가, 關稅同盟 結成後로는 域內 다른 加盟國으로부터 어떤 商品을 신규로 수입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移動은 두 加盟國相互間의 移動이 아니고 低費用 域外 第3國에서 域內高費用國에로의 移動이기 때문에一般的으로 保護貿易主義者가 容認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Viner는 첫째의 移動을 ‘貿易創出’이라 부르고 둘째의 移動을 ‘貿易轉換’이라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關稅同盟의 주된 目的是 供給地點을 移動(Shift in Source of Supply)시키는 것이며 供給地의 移動은 事情에 따라 低費用 또는 高費用地點으로 移行될 수가 있다. 이와 同時に 그는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中 어느 것이 더 優勢한 가에 따라 關稅同盟의 利得과 損失이 決定된다고 보고 있다.

貿易創出(Trade Creation) 效果가 優勢하면 두 加盟國은 勿論이고 世界全體로서도 利得을 보게 되며 域外國家들은 短期의으로는 損失을 보게 되나 長期의으로 이로울 것이다. 反對로 貿易轉換效果가 우세하면 두 加盟國과 域外國家들 그리고 世界全體로서도 損失을 입을 것이다.

1)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p. 43

Viner는 貿易을 創出하지 않고 轉換시키는 關稅同盟을 排擊하고 있다. 그 이유는 貿易轉換이 있는 경우 關稅同盟域內의 두 加盟國內의 어떠한 產業도 域外第三國들로부터 심한 경쟁의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며 域內 加盟國의 高費用 產業들이 國內消費者들을 域外 低費用供給者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새로운 消費者들을 쉽게 確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比較生產費說에 따라 國際特化方向으로의 移動이 所望스럽다는 自由貿易見解에서 보아 關稅同盟 域內國들 및 世界全體에 最大의 利得과 最小의 損失을 가져올 수 있는, 自由貿易에 立脚한, 關稅同盟條件에 관하여 Viner는 몇 개의前提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sup>2)</sup>

- (1) 關稅同盟의 經濟領域의 크기
- (2) 域外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平均關稅水準과 關稅同盟이 없는 경우의 域外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平均關稅水準
- (3) 關稅同盟 加盟國間에 있어서 從前에 保護對象이었던 高費用 產業의 生產品別 相應性 즉 被保護產業에 관한 补完性(Complimentarity) 또는 競爭性(Rivalry)의 程度
- (4) 加盟國間에 있어서 同一種類의 被保護產業의 單位費用 隔差
- (5) 自由貿易下에서 加盟國들이 比較 優位를 가질 수 있는 商品에 관한 域外 潛在輸出市場에서의 關稅水準
- (6) 關稅同盟의 結果로 인한 市場의 擴大가 域外로부터의 輸入價格보다 더 낮은 單位費用을 가능케 하는 被保護產業들의 範圍
- (7) 關稅同盟의 結果로 인한 市場擴大가 域外로부터의 輸入價格보다 單價를 낮추지 못하지만 域內에서 擴大될 수 있는 被保護產業의 範圍

위에서 보듯이 Viner는 關稅水準, 費用隔差 및 被保護商品의 領域 등을 關稅同盟結成으로부터 파생되는 結果를 판별하는 主要因으로 치고 있다. 이 점은 Balassa도 지적하고 있다.<sup>3)</sup> 어느 누구도 貿易創出이 貿易轉換을 壓倒하여 有利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保證할 수 없기 때문에 關稅同盟이 全的으로 이롭다든가 또는 전적으로 해롭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Viner는 主張한다. 다만 그는 全世界的인 關稅同盟은 全世界的 自由貿易과 同一할 것이라고 讓步하고 있다.

關稅同盟의 生產效果와 消費效果를 논하기에 앞서 以上의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에 관련된 一般化된 論議들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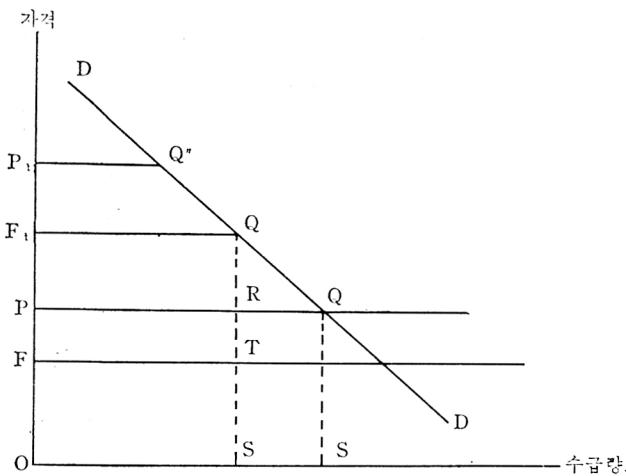
國內需要를 전부 輸入品으로만 充當하는 경우의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에 따른 得失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가 있을 것이다.

〈圖一1〉에서 DD는 需要曲線이고 FT는 關稅同盟을 맺지 않을 域外國家의 供給曲線이고  $F_tQ'$ 는 관세부과 후의 공급곡선이며 PR는 관세동맹을 형성할 상대국가의 관세부과전 공급

2) *Ibid.*, p. 51

3)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61), p. 25

&lt;圖-1&gt;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에 관세동맹을 결성한 이 나라의 經濟的 利害는 어찌될 것인가? 關稅撤廢에 따른 價格引下로 需要量은 從前의  $F_1Q'$ 에서  $PQ$ 로, 즉  $RQ$  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소비增加  $RQ$ 는 H.G. Johnson의 정의로는 貿易創出(그는 貿易創出을 關稅引下에 따른 國內生產의 감소 즉 生產效果와 價格下落에 따른 消費增加 즉 소비효과의 합計라고 정의한다)인데 이 무역창출로 말미암은 消費者 厚生의 增大는  $F_1Q'QP$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F_1Q'RP$ 는 관세감소 즉 소비자에의 환원액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消費者剩餘의 純增加는  $Q'RQ$ 가 된다.

한편 關稅同盟 結成 以前에 域外國으로부터 輸入되던  $F_1Q'$ 가 同盟結成 以後에는 域內國으로부터 수입되게 되는 貿易轉換規模인데 이 무역轉換으로부터 입게되는 經濟的 損失은 PRTF가 된다. 同盟結成 以前에 外國에 支拂하였던 金額은 FTS'O였으나 관세동맹 결성 以後에는 PRS'O를 支拂해야 하는 만큼 費用의 純增加額은 PRTF이다.

關稅同盟의 結成으로 결파하는 厚生의 純增加分은 무역장출에 따른 利益  $Q'QR$ 와 貿易轉換에 따른 損失PRTF가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그것이 事前的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같은 推論을 國內生產이 있는 경우에 적용해 보자.

<圖-2>에서 SS와 DD를 각각 國內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라 하고  $S_F$ 와  $S_F'$ 을 각각 저렴한 공급국(관세동맹 역외국)의 관세부과 전후의 공급곡선, 그리고  $S_P$ 와  $S_P'$ 을 각각 앞으로 이 나라가 관세동맹을 체결할 국가의 관세부과 전후의 공급곡선이라 한다. 관세동맹 결성以

곡선이고  $P_1Q''$ 는 그 나라의 관세부과 후 공급곡선이다.

관세동맹을 결성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두 공급국에 대하여同一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나라의 需要量은  $F_1Q'$ 이며 이 수요량은 供給單價가 저렴한 域外國으로부터의 輸入量으로써 充當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다 높은 生產費를 必要로 하는 國家와 關稅同盟을 결성하면 이 나라로부터의 관세없는 供給價格은 下落하게 되어 과거의 供給地였던 저렴한 生產費의 域外國은 供給을 中斷할

前에는 양국에 대하여同一한 稅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생산은 OK, 수입량은 저렴한 공급국으로부터 KL이며 소비는 OL이었다 하자. 지금 비싼 공급국과 관세동맹을 결성하면 국내생산은 OI, 수입량은 고가의 공급처로부터 CD, 소비량은 OJ가 된다. 즉 생산의 감소는 IK, 소비의 증가는 LJ로서 무역창출은 IK+LJ이며 무역전환은 KL이다.

무역창출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은 ACE이며 소비자 효용의 증가는 BFD로서 이 두 면적을 더한 것이 貿易創出의 經濟的 利得이다.

反面 貿易轉換에 따른 貿易業者の 對外支拂은 同盟前의 GHLK로부터 同盟後의 EFLK로, EFHG 만큼 증가하여 經濟的 損失을 초래한다.

이로써 關稅同盟의 純損益은 ACE와 BFD의 합계에서 EFHG의 면적을 차감한 것과 같아질 것이다.

다음에 關稅同盟에 加入할 相對國의 供給曲線이 역시 右上向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域外國의 供給曲線은 역시 無限彈力의이라 간주한다. <圖-2>에서  $S_F$ 는 域外國의 供給을 의미하고  $S_H$ 와  $S_P$ 는 각각 本國과 相對加盟國의 供給曲線을 表示하고  $S_{H+P}$ 는 本國과 相對國의 供給을 結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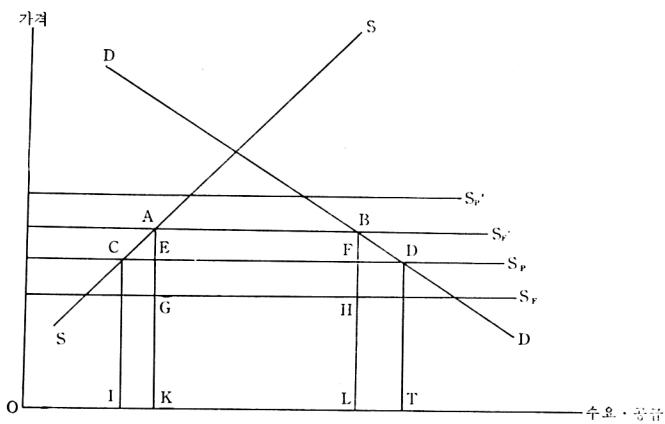
만약 저렴한 공급국인 域外國의 供給價格  $OP_1$ 에 대한 관세수준이  $P_1P_2$ 以下이면 국내생산은 OA 以下일 것이며 域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은 AB 以上일 것이다. 加盟相對國으로부터의 輸入은 없을 것이다.

이 때에 對域外關稅를 그대로 두고 本國과 加盟相對國이 관세동맹을 결성하면 관세수입이 없어지고 域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으로 代替되는 貿易轉換效果만 발생할 것이며 本國에는 해로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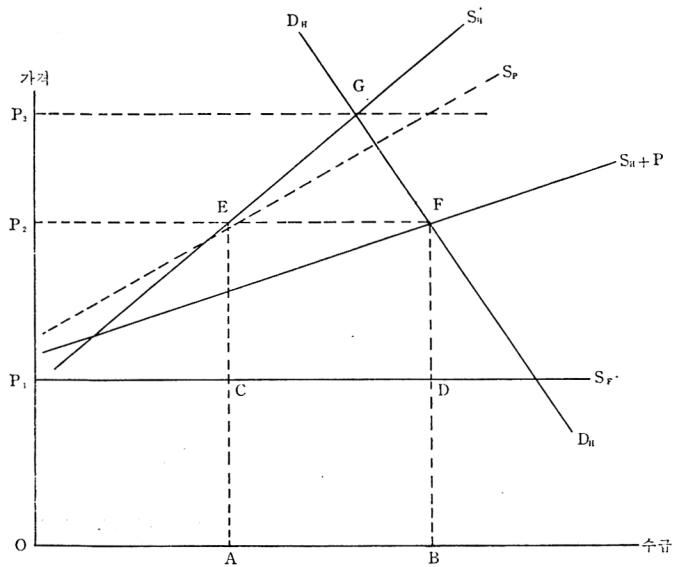
만약 역외국에 대한 관세가  $P_1P_3$ 以上일 경우에 두 나라가 관세동맹을 맺게 되면 貿易創出效果만이 있을 것이며 本國에는 이로울 것이다.

관세수준이  $P_1P_2$ 보다는 높고  $P_1P_3$ 보다 낮을 때에 이를 對域外關稅로 하고 관세동맹을 결

&lt;圖-2&gt;



&lt;圖-3&gt;



만큼, 供給量의 減少에 따라 下落한다. 그런 결과로 差別關稅를 부과하는 이 나라는 關稅를 부담하고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이 域外國의 輸出品에 대하여 交易條件改善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關稅同盟 以後에도 持續될 이 域外國과의 貿易(이 경우 域外國의 輸出)은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貿易轉換의 규모는 작을 것이고 거기 따른 損失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주장 즉 關稅同盟은 國內產業보다도 域外國의 產業을 희생하고 相對加盟國을 이롭게 하며, 域外國의 희생하에 相對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하면 國내消費者가 손실을 본다는 단순한 주장을 다소 制約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供給曲線의 不完全彈力性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특성은 關稅 철폐 以後에 相對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增加함에 따라 그 供給價格이 上昇하게 되며 이는 相對加盟國과의 交易에 있어 交易條件이 悪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때의 貿易轉換 單位當 이 나라가 입는 損失은 供給曲線이 수평일 때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와 反面에 관세동맹의 兩加盟國을 합쳐서 볼 때 이는 純損失이 아닐 수 있다. 즉 關稅引下國의 消費者剩餘가 相對加盟國의 生產者剩餘로 移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關稅同盟의 經濟的 得失을 고려함에 있어서 輸出入商品間의 補完性과 代替性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域外國의 特定財貨가 相對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財와 補完關係에 있을 때 相對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財에 관세를 철폐하면 그 輸入도 늘고 이에 따라 그것과 補完關係에 있는 域外國 財貨의 輸入도 增加함으로써 이 關稅를 폐지한 國家의 域外國과의 貿易創出

성하면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이 同時に 發生하고 關稅收入이 減少하여 그 經濟的 利得은 一義的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은 앞서의 論議와 같다.

다음에 이들 관련된 3國의 供給曲線이 모두 右上向인 生產費 漸增의 경우에는 몇 가지 留意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域外國으로부터 加盟國으로 輸入이 轉換되면 그 域外國의 供給價格은, 供給曲線이 水平이 아닌 右上向인

이增加하여 附加的의 利得을 얻을 수 있다. 또 만약에 이 나라의 相對加盟國에 대한 特定輸出品이 關稅引下로 增加하는 이 경우에 이 財貨가 이 나라의 國內消費에 있어 域外國의 特定財貨와 代替關係를 가지면, 相對加盟國에 대한 이 特定輸出品의 輸出이 增加함으로써 國內需要充當分의 不足과 價格上昇으로 그 代替財인 域外國 財貨의 輸入이 增大하고 이에 따라 關稅收入의 增加로 利得이 증가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補完性과 代替性은 위의 경우와 反對로 貿易轉換과 결부하여 損失의 增加를 가져오는 수도 있을 것이다.

關稅同盟의 結成에 따른 經濟的 利害得失을 各國別로 細密하게 分析하는 것이 可能한 일인기는 하나 매우 장황한 설명을 必要로 할 것이다.<sup>4)</sup> 關稅同盟의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에 따른 效果를 大略 다음과 같이 극히 개괄적으로 一般化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關稅同盟에 加入하여 相對加盟國에 대하여 關稅를 引下하는 國家는 當初의 關稅率이 높을수록 그리고 相對加盟國과 경합관계 있는 財貨의 國內 供給 및 需要의 彈力性이 클수록 貿易創出에 의한 利得이 커진다.

둘째로 相對加盟國과 域外國이 함께 生產할 수 있는 商品의 兩國內에서의 生產費 隔差가 작을수록, 이를 商品의 供給에 있어 相對加盟國의 탄력성이 크고 域外國의 彈力性이 작을수록, 그리고 또한 當該國內 消費에 있어 相對加盟國의 商品과 域外國의 商品間의 代替의 정도가 작을수록, 貿易轉換에 따른 損失이 적어질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 나라의 輸入品에 관하여 域外國의 供給彈力性이 작고 또 이 나라의 輸出品에 대하여 域外國의 需要彈力性이 작을수록 域外國의 貿易에 있어 이 나라의 交易條件이 改善될 것이다.

네번째로는 關稅同盟 結成 以後의 關稅率이 同盟結成 以前의 水準보다 낮을수록 貿易轉換에 따른 損失도 적어지고 또한 域外國과의 交易條件 改善에 따른 利得 역시 작아질 것이다.

다섯째로 加盟國間의 產業의 競合이 심한 동시에 產業間의 生產費差가 클수록, 그리고 이를 財貨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關稅同盟의 經濟的 利得이 커질 것이다.

여섯째 加盟國들의 生產構造가 域外國과 크게 다를수록 무역전환에 의한 손실이 적을 것이며 또한 域外國들이, 이를 地域에서 공급탄력성이 낮은 品目의 輸入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지역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品目의 輸出에 대해서, 加盟國들에의 依存度가 높을수록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국가의 交易條件改善效果가 크고 따라서 經濟的 厚生도 증진시킬 가능성이 커진다.<sup>5)</sup>

끝으로 지적해 둘만한 것은 貿易量과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一國의 貿易量이 一定한 경

4) 不完全彈力의 供給曲線下에서의 關係國別 經濟的 得失에 관하여는, H. G. Johnson, "The Economic Theory of Customs Unio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Appendix 참조

5) *Ibid.*, pp. 56~8

우一國의 相對加盟國과의 貿易量比重이 클수록 그리고 域外國들과의 比重이 작을수록 關稅同盟의 經濟的利得은 커진다. 또한 一國의 自國產財貨의 消費支出이 클수록 그리고 域外國產財貨의 購入支出이 작을수록 (域外國產 購入支出은 그 나라의 貿易規模가 작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가진다) 關稅同盟의 利得은 커진다.<sup>6)</sup>

다음에서는 關稅의 生產效果와 消費效果를 구분하여 分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I. 生產效果

#### 一生產國間의 代替—

Viner의 主張은 暗示的으로 生產費 節減을 초래할 生產效果를 強調하고 反面에 消費效果는 等閑히 하고 있다. Viner가 檢證하려는 것은 各國의 相對價格은 實質變形率을 反影한다는 것이다. 高費用國家에서 特定產品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資源(가령 30원이라면)은 低費用 國家(가령 1단위당 20원이라면)와 關稅同盟을 結成한다고 하면, 이 特定商品의 한 단위를 얻는 이외에 추가로 더 큰 利益을 보게 될 것이다.<sup>7)</sup>

關稅同盟에 基因하는 生產費用의 節減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1) A國과 B國은 關稅同盟 結成 以前부터 特定財貨를 生產했고 이 關稅同盟은 同財貨의 最低費用 供給國을 포함하고 있었다. 同盟結成後 效率이 낮은 國家 A는 이 商品의 生產을 中斷하고 國內需要는 B國으로부터의 輸入으로 充當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正의 生產效果가 나타날 것이다.
- (2) 從前에 兩國이 모두 同商品을 生產하였으나 이 두 會員國 어느 쪽도 最低費用 生產國이 아니다. 이 두 나라는 第3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하여 差別措置를 實施하였다. 同盟結成後 貿易은 創出될 수 있으나 새로운 貿易關係는 全世界的 自由貿易보다 劣惡한 立場에 있다.
- (3) B國이 同商品의 最低費用 供給國이며 A는 同商品을 保護下에서 生產하지 않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同盟結成後에 아무런 變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4) B國이 同商品을 保護下에서 生產하고 있었으며 A國은 最低費用 國家인 C國으로부터 輸入하고 있었다. A와 B 사이에서 關稅를 除去하면 A國의 需要是 C로부터 B로 전환한다. 이는 B國의 生產費用이, C國의 生產費用과 關稅賦課額과의 合計額보다 작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結果는 앞의 경우보다 덜 效率의이다.
- (5) A國이나 B國도 同商品을 關稅保護下에서 生產하지 않았다. 이 두 나라 사이에 關稅同盟이 結成되더라도 아무런 變化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나라는 最低費用 供給國인 C國으로부터 同盟結成後로도 계속 同商品을 輸入할 것이다.<sup>8)</sup>

6) R. G.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 General Survey," *Economic Journal*, Vol. LXX, No. 279, reprinted in AEA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s pp. 273~4

7) *Ibid.*, p. 262

8) Balassa, *op. cit.*, 26~7

上記 說明에서 注目할 것은 Viner 는 關稅同盟을 結成하기 以前에 會員國에 있어서 保護 받는 產業의 補完度가 작을수록 혹은 競爭度가 클수록 經濟的 利得이 크다고 主張한 점이다. 이 主張은 關稅同盟에 있어 競爭性은 不利益이 되고 補完性이 利得이 된다는 傳統的인 國際分業 見解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sup>9)</sup> 補完性과 競爭性이라는 用語는 때로 매우 애매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Viner 의 定義에 따르면 補完性(Complementarity)이란, 關稅에 의하여 保護를 받는 財貨의 分類에 있어 重複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反面에 競爭性(Rivalry)이란 그 것이 상당한 정도로 重複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補完性과 競爭性을前提로 한다면, 만약 두 나라 經濟가 競爭的이어서 關稅 保護를 받고 있는 財貨들이 상당한 程度로 重複되어 있어 이 두 나라 가운데 效率性이 높은 側이 同盟內의 市場을 席捲하게 되고 또한 이 경우에는 資源이 보다 效率的인 方向으로 再配分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이 두 나라의 產業이 상당한 정도로 重複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한 나라의 被保護產業이 關稅同盟 結成後 同盟內 全市場을 把握하게 됨으로써 同盟內의 資源再配分은 德 效率的인 方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sup>10)</sup>

한편, 競爭的 經濟를 相對的으로 類似한 生產費用關係를 가진 經濟라고, 反面에 相對的으로 다른 生產費用關係를 가진 것을 補完的 經濟라고 指稱한다고 보아서 Makower 와 Morton 은 補完的 經濟 사이에서 關稅同盟이 結成될 때 經濟的 所得이 더 크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經濟的 利得과 補完性을 함께 生產費 階差로써 測定하기 때문에 이는 分明하게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生產條件으로써 추론해 보자.<sup>11)</sup>

〈表-1〉

國家 \ 商品	X	Y	Z
A	1	14	29
B	2	12	30
C	14	20	1

A, B, C는 國家들이고 각 숫자는 商品 X, Y, Z에 대한 國別 單位當 貨幣生產費이다.

여기서 두 개의 极端적인 關稅率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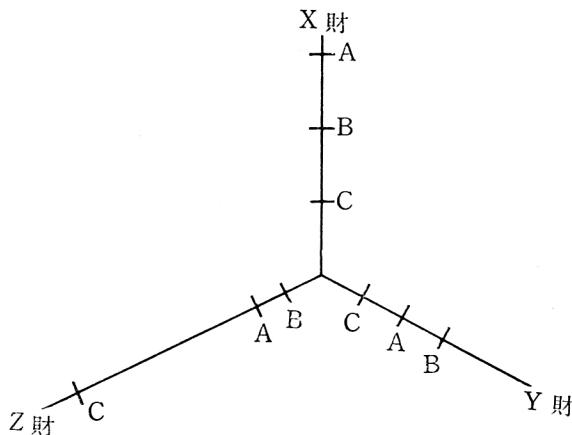
첫째로 關稅率이 너무 낮아 上記 9個 產業의 어느 것이라도 保護하기에 不充分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上記表의 경우에는同一商品에서 2個國間 가장 낮은 生產費差의 比率이 3.4%이다. (즉 A, B兩國의 Z商品 生產費는 29와 39인데 그 差異는 1로서 그 격차의 보다 낮은쪽

9) Viner, *op. cit.*, p. 5

10) Lipsey, *op. cit.*, p. 263

11) H. Makower and G. Morton, "A Contribution towards a Theory of Customs Union," *Economic Journal* (March, 1953), p. 36

&lt;圖-4&gt;



는 B의 費用이 C國의 費用의 30倍이니 만큼 그 관세율은 2,900% 以上이 돼야 한다)

上記表의 貨幣費用의 逆數를 취하여 生産性으로써 表示하면 <圖-4>와 같이 各國에 있어 單位支出當 生產되는 各財貨의 生產量을 X, Y, Z 軸에 표시할 수가 있다. 가령 X, Y, Z 軸의 A 점을 각各 이어서 만든 平面은 一定支出로써 얻을 수 있는 選擇的인 生產可能性을 나타나게 된다.

위 그림에서 만약 關稅率이 上述한 바의 最大值(2,900%)이거나 또는 그것을 초과하면 X, Y, Z 軸의 모든 점들이 현실적으로 生產될 수 있고 따라서 最高費用 產業도 生產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A, B 兩國關係가 A, C 兩國關係보다 더욱 類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表-2>에서 보듯이 A와 B 兩國間의 同盟은 A와 C間의 同盟보다는 利得이 적다.

&lt;表-2&gt;

同盟 \ 商品	X	Y	Z	總效果
A와 B	小利得	小利得	小利得	小利得
A와 C	大利得	小利得	大利得	大利得

反面에, 關稅率이 最大 極端值(2,900%)보다 낮고 最小 極端值(3.4%)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로 한다.

첫째 C國의 X, Y財와 A, B國의 Z財를 除外한 다른 產業을 保護할 수 있도록 關稅率을 設定한다고 하자, A, B間, A, C間의 關稅同盟 結成에 의한 得失關係는 다음 <表-3>과 같을 것이다.

둘째로 만약 A, B 兩國에서 다른 상품은 보호하고 Z만을 보호하지 않은 채로 放任하면 그 효과는 다음의 <表 4>와 같다.

의 生產費에 대한 비율 1/29은 3.4%이다) 그러므로 3.4%보다 낮은 關稅率로써는 資源의 國際的 再配分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關稅同盟에 의한 그 關稅의 除去로도 달라지지는 것이 없다.

둘째로 다른 極端的인 關稅率 즉 너무 높아서 上記表의 9個 全產業을 保護할 수 있는 水準의 關稅率이다. (上記表에서는 B國의 Z商品生產을 C國의 경쟁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表-3〉

商品	X	Y	Z	總效果
同盟				
A와 B	小利益	小利益	0	小利益
A와 C	0	0	0	0

〈表-4〉

商品	X	Y	Z	總效果
同盟				
A와 B	小利益	小利益	0	小利益
A와 C	大利益	大利益	0	大利益

세째로 結成以前의 關稅가 C國의 X와 Y財, 그리고 B國의 Z財를 保護하지 아니한 水準이었다면 關稅同盟의 結成으로 나타날 결과는 다음 〈表-5〉와 같다.

〈表-5〉

商品	X	Y	Z	總效果
同盟				
A와 B	小利益	小利益	大損失	損失
A와 C	0	0	0	0

이번에는 費用關係의 構成을 〈表-6〉과 같이 약간 바꾸고 다만 關稅率은 앞서의 두 극단 水準 사이에 있다고 하자.

〈表-6〉 商品別價位生產費

商品	X	Y	Z
國別			
A 國	2	14	29
B 國	1	12	30
C 國	14	20	1

生產費 關係가 上記 〈表-6〉과 같이 되어 있다면 C國의 X, Y財와 A, B國의 Z財를 보호하지 않고 自由化하고 다른 상품은 모두 보호하여 왔다고 하였을 때 A와 B, A와 C 사이의 關稅同盟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Z商品에 있어서는 結成後도 C國에서 계속 수입할 것이므로 그 效果는 0이다.

〈表-7〉

商品	X	Y	Z	總效果
同盟				
A와 B	小利益	小利益	0	小利益
A와 C	小損失	小損失	0	小損失

다음으로 A, B 兩國에서 Z商品만을 保護없이 無關稅로 自由化하고 있었다면 關稅同盟의 結成의 效果는 아래와 같이 된다.

〈表-8〉

同盟	商品	X	Y	Z	總效果
		A와 B	小利益	小利益	0
A와 C	大利益	大利益	0	大利益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生產費關係가 相異하면 無數히 많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많은 得失의 組合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다섯 경우만을 가지고서도 經濟의 補完性과 關稅同盟의 利得과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에 充分하다. A와 B 및 A와 C의 두 가지 關稅同盟의 경우, 이 兩同盟이 모두 利益을 結果한다면, 보다 큰 利益을 提供하는同盟은 보다 큰 補完性을 가진 國家끼리의 同盟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兩同盟이 모두 損失을 結果하는 경우에는 補完性이 더 큰 國家끼리의 同盟이 더 작은 損失을 招來한다. 이러한 結論이 적용되는 경우는 關稅率이 앞서 말한 上下 兩極端 사이에 정해져 있을 때이다. 만약에 關稅率이 모든 產業들을 모두 生產可能토록 보호해 주는 上限 極端水準(上記例에서는 2,900 %)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큰 補完性을 가지는 國家끼리의 關稅同盟은 어느 때라도 補完性이 작은 國家끼리의 同盟보다 더 큰 利得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被保護產業의 補完性과 競爭性(Rivalry or Competitiveness)에 관련된 Viner의 定義와 Makower-Morton의 定義의 外見上の相互 모순성을 調整해 보는 것이 有用하리라고 본다. 우리가 이 두 가지 定義를 結合시키면 關稅同盟의 두 加盟國이 同一한 商品들을 더 많이 生產할수록 그리고 또 이 두 加盟國에 있어서 그同一財貨의 生產費 隔差가 크면 클수록 그 關稅同盟은 더 큰 生產上의 效率을 획득한다고 結論지울 수 있을 것이다.

Meade 역시 生產費 差異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있다. Meade는 貿易量의 變動과 生產費의 差異라는 두 要素를 結合함으로써 生產效果를 貿易創出額(個別品目×單位費用 差異)과 貿易轉換額(個別品目×單位費用 差額)과의 差異로 推算한다. 만약 貿易이 創出된 品目の 單位費用 差異가 貿易이 轉換된 品目的 單位費用 差異보다 複雑 더 크다면, 비록 去來量의 變動으로 測定된 貿易轉換(量)이 貿易創出(量)을 凌駕하더라도, 關稅同盟은 有益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2)</sup>

生產效果에 관하여 Balassa는 正의 生產效果와 負의 生產效果의 概念을 導入하여 正의 生產效果란 生產費 節減을, 그리고 負의 生產效果란 追加的 生產費用의 支拂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을 區別하는 代身에 正負의 生產效果의 개념을 도입한 데에 特徵이 있다. 그는 Meade처럼, 貿易創出量 또는 貿易轉換量에 個別商品의 單位費用의 差額을 곱해서 算出하는 利得 또는 損失의 推算은 無限供給彈力性의 假定下에서만 適用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遷增生產費가 優勢한 경우에는 供給曲線上에서 費用增分이 다르게 될 것이라는 사

12) J. E. Meade, *The Theory of Customs Union* (Amsterdam: North-Holland, 1955), pp. 35~6

실을 지적하고 있다.

關稅同盟의 結成 以前에 A國의 X財에 대한 需要가 國內生에 의하여 一部 充足되고 나머지는 B, C國으로부터의 輸入으로 充當한다고 하자, 현재 A, B兩國間에 關稅同盟이 結成되었다면 A國의 X財價格은 下落하고 同時に X財의 國內生產과 最廉價供給國인 C國으로부터의 輸入이 抑制되고 B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增加한다. 그러므로 自國(예컨대 A國)의 供給彈力性이 클수록 國內供給의 減少가 커지고 따라서 正의 生產效果가 커진다. 反對로 外國(예컨대 C國)의 供給彈力性이 클수록 그 外國으로부터의 輸入減少가 커지고 따라서 負의 生產效果가 커진다.

이번에는 다시 B國이 關稅同盟 以前에 그 X財를 D國에도 輸出하고 있었다고 假定해 보자. A國과 B國 사이의 關稅免除은 A, B兩國 사이에 새로운 貿易을 創出하기는 하나 部分的으로 B國의 D國에 대한 輸出을 犠牲으로 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一定費用의 條件下에서는 加盟國의 非加盟國에 대한 輸出은 關稅同盟內의 貿易增加로 영향을 입지 않지만 費用增加의 條件下에서는 B國 輸出品의 一部가 關稅同盟外部(즉 D國)에의 輸出로부터 關稅同盟 加盟國에의 輸出로 轉換될 것이다. B國의 供給彈力性이 클수록 貿易創出에 의한 利益이 커질 것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外國(D國)의 供給彈力性이 클수록 貿易轉換에 의한 損失이 커질 것이다.<sup>13)</sup>

## IV. 消費效果

### 一財貨間의 代替—

國家間의 代替를 나타내는 生產效果에 이어 여기서는 關稅同盟의 結成이 消費에 미치는 效果 그리고 이에 바로 直結되는 厚生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生産效果를 強調하고 貿易轉換이 必然的으로 厚生의 減少를 結果할 것이라는 見解에서 이 貿易轉換을 反對하는 立場을 취하는 Viner에 있어서는 財貨들이, (關稅賦課에 의하여 現實의 으로 영향을 입는) 相對價格 構造에 獨立的인 어떤 一定比率로 消費되고 있다고 假定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가 財貨間의 代替의 可能性을 排除한다면, 關稅同盟의 結成으로 일어나는 經濟厚生의 變化를 測定함에 있어서는 一國에서 他國으로의 貿易의 移動을 分析하면 充分할 것이다. 相對價格이 一定한 경우에는, 低費用 供給者로부터 高費用 供給者로의 貿易轉換은 外國財貨價格의 上昇을 통하여 반드시 輸入財貨의 消費를 減縮시키고 아울러 國產財貨의 消費도 比

13) Balassa, *op. cit.*, p. 28

例的으로 減少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消費減縮은 그 貿易轉換을 행하는 國家의 厚生을 必然的으로 低下시키게 될 것이다.<sup>14)</sup>

關稅同盟의 消費效果를 檢證함에 있어서 Meade는 貿易擴張(Trade Expansion)과 貿易縮小(Trade Contraction)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우선 完全非彈力의인 需要와 完全彈力의인 供給을 除外하고, 關稅同盟이 特定 財貨의 價格의 下落을 結果하였다면 關稅同盟內의 特定輸入國의 消費增大에 基因한 貿易擴大는 厚生增大를 誘發할 수 있는 事例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社會構成員의 貨幣의 限界效用이 모두 같고 또한 基數的 效用函數가 存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1톤의 강철 生產費가 韓國에서 100달러이고 日本과 臺灣에서 각각 150달러 및 250달러라고 가정하고 또한 臺灣이 韓國 및 日本의 강철에 대하여 一律적으로 100% 單一關稅率을 적용시켰다고 한다면 臺灣이 日本과 關稅同盟을 맺기 以前에는 韓國에서만 輸入하게 될 것이다. 臺灣과 日本과의 사이에 關稅同盟이 이루어지게 되면 臺灣이 輸入하는 강철 價格은 從前의 200달러(韓國產 강철 原價 100달러 + 關稅 100달러)로부터 150달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과 臺灣과의 關稅同盟은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하여 關稅를 免除하기 때문에 日本產 강철의 原價 150달러가 그대로 輸入價格이 되기 때문이다.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강철價格이 이렇게 下落하기는 하였으나 生產側面에 있어서 韓國과의 從前 貿易과 比較하면 강철 1단위당 50달러씩의 損失을 結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臺灣에서 從前 輸入價格 200달러에 비하면 價格이 상당히 下落된 것인만큼 臺灣의 강철需要量이 예컨대 從前의 1百萬噸에서 3百萬噸으로 늘어 이 關稅同盟의 두 會員國 사이의 貿易이 크게 擴大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假定에서 본 2百萬噸의 需要增加量을 金額으로 換算한다면 關稅同盟 初期의 最高價格은 톤當 200달러(한국으로부터의 수입원가 + 관세 즉 대만의 생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400百萬달러에 상당하고 關稅同盟結成 以後의 最終 最低價格 톤당 150달러(日本으로부터의 輸入原價 + 無關稅)를 기준으로 하면 300百萬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追加된 2百萬噸의 강철은 消費者들에게는 400百萬달러 어치의 가치가 있고 反面에 日本生產者들에게는 300百萬달러 어치의 生產費를 追加케 한 것이다. 그러므로 100百萬달러 어치의 經濟的 利得이 記錄되어, 韓國의 低費用 生產者로부터 日本의 高費用 生產者에게로 現行 百萬噸의 강철 무역을 轉換함에서 오는 50百萬달러의 經濟的 損失을 補償하고도 남을 것이다.<sup>15)</sup>

日本產 강철에 대한 輸入關稅를 除去하게 되면 臺灣에 있어서의 日本강철 購入價格은 下落하고 同時에 日本의 강철販賣價格은 上昇한다. 日本產 강철에 대한 臺灣의 需要가 彈力의 일

14) Lipsey, AEA Readings, p. 266

15) Meade, *op. cit.*, p. 40

수록 그리고 또 日本의 강철供給이 彈力的일수록 그로 결과하는 臺灣의 日本產 강철의 輸入量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一次的變化는 항상 有益한 方向을 취할 것이다. 이一次的變化에 있어서는, 臺灣의 關稅引下에 基因하는一次的貿易擴大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日本產 강철에 부과된 當初의 臺灣關稅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關稅引下後의 臺灣의 厚生은 더욱 크게增進될 것이다.<sup>16)</sup>

Meade는一次的變化뿐만 아니라 關稅引下가 代替財와 補完財의 貿易에 미치는二次的反作用과 또한 國際收支에 미치는三次的效果도 계속 分析하고 있는데 이效果들에 관하여는 本稿에서 除外하기로 한다.<sup>17)</sup>

Balassa의 見解를 보면, 生產效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消費者들이 域外國의商品代身에 加盟國의商品을 代替購入하는 것보다 오히려 國內財貨代身에 加盟國의商品을 代替購入하는 경우에 正의消費效果가 현저해 진다. 交易 패턴의變化가 일정하다면 加盟國間에 交易되는商品의價格比率에 있어當初의隔差가 클수록 正의消費效果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며 이와 對照의으로 交易商品의價格比率隔差가 加盟國들과 非加盟國들과의 사이에 적을수록負의消費效果가 적어질 것이다. Balassa式으로表現한다면 關稅率 및 費用의隔差以外에도加盟國經濟의商品代替性과 補完性 및 生產構造도消費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加盟國間에 生產構造가 競爭의이면 競爭의일수록 이加盟國들의商品은相互間 더 훌륭한 代替財가 될 수 있고 따라서 貿易增加도 더 크고 正의消費效果도 더 커진다. 이와 反對로加盟國들과 非加盟國들이 補完의이면 이들 두 그룹 사이의商品代替性이 작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非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의減少는 微微하게 된다.<sup>18)</sup>

Gehrels는低費用供給者로부터高費用供給者에로의輸入轉換이 반드시輸入國의厚生을惡化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高費用生產國으로의轉換에 따라交易條件이惡化되기는 하지만 關稅同盟의加盟國은 關稅同盟結成以前에 다른나라로부터輸入하던것보다 더 많은양을 關稅同盟後加盟國으로부터輸入함으로써 이加盟國의厚生이더增進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關稅同盟結成後의無關稅相對價格이 關稅同盟前 關稅부과된相對價格보다는 더 높은無差別曲線과相應한다는점을 설명하면서 Gehrels는 關稅同盟의參與國은單一國의見地에서는 항상厚生을增進시킨다는것을證明한다. Gehrels의主張에따르면當該國은 關稅同盟前의國內生產量과同一한量을보다낮은價格으로 지금은加盟國으로부터購入할수있을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財貨가消費者들에있어從前보다상대적으로더싸졌기때문에當該輸入財貨를전보다더많이輸入하고消費할수있게된다.<sup>19)</sup>

16) *Ibid.*, p. 67

17) *Ibid.*, Chaps. V~VI

18) Balassa, *op. cit.*, p. 28

19) F. Gehrels, "Customs Union from a Single Country View-poi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4, pp. 63~4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의 輸入商品만을 介入시킨 二國間의 同盟이라는 單純한 경우만을 상정했다 하여 批判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Lipsey에 따르면 이와 같이 지나치게 單純化된 假定下에서는, 關稅同盟의 加盟國 消費者들은 그들의 輸入財와 國產品의 購入比率을, 輸入財의 消費에 대하여 과해진 關稅를 除去한 때의 國際貿易을 통한 交換比率과 一致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指摘되고 있다.<sup>20)</sup>

이에 대한 反論으로 Lipsey는 三國 三商品을 포함하는 모델로써 純粹한 消費效果의 性格은 규명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서는 A國이 Z商品 生產에 特化하여 그一部를 輸出하고 B國으로부터는 X商品을 輸入하고 C國으로부터는 Y商品을 輸入하고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 그리고 이 세商品을 포괄하는 效用函數를  $U=u(x, y, z)$ 로 表示한다면, 이 效用函數의 極大化 條件은 各商品의 限界效用이 各商品의 價格에 比例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개의 適正消費條件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y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x \quad (1)$$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x \quad (2)$$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y \quad (3)$$

만약 X財와 Y財에 單一從價稅率이 賦課된다고 하면 各消費者的 現實的 條件은 다음과 같아 될 것이다.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y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x \quad (1-a)$$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x, \quad (P_x \cdot T_x > P_x) \quad (2-a)$$

$$\left(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x \cdot T_x \right)$$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y, \quad (P_y \cdot T_y > P_y) \quad (3-a)$$

$$\left(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y \cdot T_y \right)$$

여기서  $T_x$ ,  $T_y$ 는 X財, Y財의 輸入原價에다 關稅額을 더한 金額의 原價에 대한 比率을 말하는 것으로서  $T_x-1$ ,  $T_y-1$ 이 각각 X財 및 Y財의 輸入關稅率을 表示한다.  $P_x$ ,  $P_y$ ,  $P_z$ 는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X, Y, Z財의 가격이다. X財와 Y財에 대하여는 同一한 從價稅가 賦課되었으므로 X財와 Y財의 消費에 대한 適正條件은 變動 없으나 X財나 Y財에 비하여 國產財貨인 Z의 소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表示한다. 따라서 세개의 適正條件 가운데 하나

20) R. G. Lipsey, "Mr. Gehrels on Customs Union," RES, Vol. 24, p. 212

는 充足되고 둘은 充足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A國과 B國이 關稅同盟을 結成하고 關稅는 C國 財貨인 Y財에만 賦課되고 X財에는 이 以上 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면 이 때 A國의 모든 소비자가 직면하는 狀況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y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x, \quad (P_y < P_y \cdot T_y) \quad (1-b)$$

$$\frac{\partial u}{\partial x}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x \quad (2-b)$$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y, \quad \left( \frac{\partial u}{\partial y} \cdot P_z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P_y \cdot T_y \right) \quad (3-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는 X財와 Z財에 관해서만 단 하나의 條件이 充足되고, 關稅同盟 結成前에 X財와 Y財間에 充足되었던 최적 조건이 關稅同盟 結成後에는 成立되 아니하여 Z財와 Y財間에도 結成後에도 結成前과 같이 最適條件이 充足되지 아니한다. 그 結果로서는 X財 및 Z財가 Y財에 비하여 過度히 消費되게 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最適條件들을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關稅同盟 結成의 前後로 厚生의 增減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는 分明하지 않다. 왜냐하면 假定에 의하여 그 두 경우가 다 最適狀態가 못되기 때문이다.<sup>21)</sup> 이점은 조금 뒤에 다시 논의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議로 보아서 關稅同盟이 반드시 厚生의 增進을 同伴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上記의 議議가 대체로 消費效果가 어떠한 傾向을 띠울 것인가를 推斷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만약에 關稅率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同盟內의 消費에 있어서 域內貿易의 比重이 크면 클수록 厚生의 增進도 더 크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理由로는 消費의 最適條件이 國內에서 消費되는 財貨의 더 많은 部門에서 充足될 수 있기 때문이다. 域外國家들과의 貿易量보다 域內國家들과의 貿易量이 더 클수록 正의 消費效果가 더 커질 것이다. 同時에 加盟豫定國들의 同盟前 外國貿易量이 적으면 적을수록 負의 消費效果의 可能性이 더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交易量이 적을수록 域外國家들로부터의 購入이 域內財貨의 購入量에 비하여 더적을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sup>22)</sup>

여기서 注目할 만한 것은 Lipsey 가 貿易轉換이 厚生의 增加를 일으키는 경우를 例證한 것이다. 그는 貿易轉換效果가 優勢한 경우에는 關稅同盟 加盟國들 中 적어도 한 加盟國과 域外國 및 世界全體로 보아 損失을 볼 것이라는 Viner의 結論<sup>23)</sup>에 대한 反論을 提起하였다. Lipsey는 社會無差別曲線이 個人의 無差別曲線과 同一하여 (실은, Lipsey는 相異한 無差別曲線을 가진 相異한 두 사람의 경우도 역시 검토하고 있다), 또 交易國의 數가 3個로 構成되

21) Ibid., p.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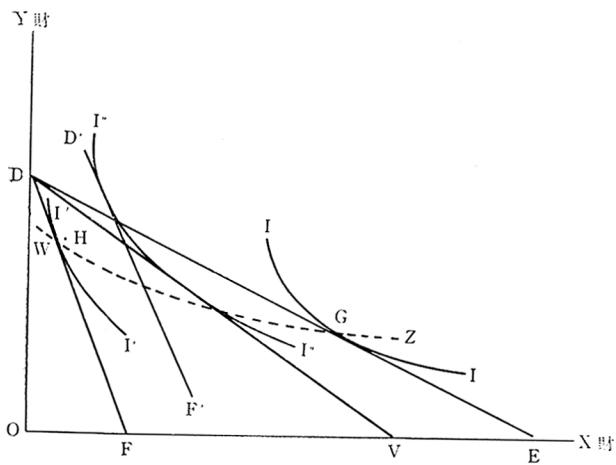
22) Balassa, op. cit., p. 60; Lipsey, AEA Readings, p. 274

23) Viner, op. cit., p. 44

어 있다고 假定한다.

A國은 Y財의 生產에 特化하고 B國과 C國으로부터 Y財와 交換으로 X財를 輸入한다고 하고 C國은 X財를 더 낮은 價格으로 提供한다고 假定하자, 그러면 差別的 關稅가 없는 경우에는 A國은 X財를 輸入하고 Y財를 輸出하면서 C國과 交易할 것이다. 勿論 여기서는 A國이 X財의 國內生產을 保護할 만큼의 높은 輸入關稅를 X財輸入에 賦課하지 않고 따라서 A國이 X財를 C國으로부터 輸入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圖-5〉



다음의 그림 〈圖-5〉에서 OD는 Y財의 總生產을 表示하고 DE는 交易條件을 나타낸다. II는 社會無差別曲線이며 OE는 X財의 輸入量이다. WHGZ는 價格消費曲線이고 G點은 自由貿易 均衡點이다.<sup>24)</sup>

만약 X財의 輸入에 대하여 EF/OF 만큼의 關稅率이 부과된다면 새로운 均衡點은 H點이 될 것이다. 이 H點에서는 새로운 國內價格線이 社會無差別曲線과 접하게 된다. 그러나 徵收된 關稅가 全額 消費者에게로返還

된다고 假定하면 最終均衡點은 DE線上의 어느 한 點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 DE線上의 均衡點에서, 새로운 國內價格線 DF에 平行한 임의의 직선 D'F'과 어느 社會無差別曲線이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새로운 狀況은 두 개의 相反되는 效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效果 가운데 하나는 一定 輸入量을 確保하는 데에는 以前보다 더 많은 Y財의 輸出을 不可避하게 함으로써 厚生을 減退시키는 效果를 말함이고 다른 하나의 效果는 國內價格과 國際價格과의 乖離를 除去함으로써 厚生을 增進시키는 效果를 말한다.

그런데 만약 이 때 C國보다 X財를 더 높은 費用에서 生產하고 있는 B國과 더불어 A國이 關稅同盟을 結成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關稅 없이 B國으로부터 輸入하는 X財의 價格이 關稅가 부과된 C國으로부터의 X財 價格보다 낮다고 한다면 A國은 B國으로부터 X財를 輸入하게 되고 C國으로부터의 X財 輸入은 中斷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B國과의 交易條件이 無差別曲線 I''I''와 접하는 直線 DV의 기울기와 같다고 하면 A國은 C國과 交易할 때와 같은 水準의 厚生을 유지하게 된다. 交易條件이 直線 DV

24) R. G.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 Trade Diversion and Welfare," *Economica*, Vol. 24, p. 42

의 기울기보다 劣惡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貿易을 轉換하는 關稅同盟이 A國의 厚生增進을 結果하게 된다.

均衡點에서 實現된 無差別曲線보다 더 높은 位置에 있으면서 國際價格線보다는 낮은 位置에 있는 無差別曲線들의 領域(즉 그림에서 직선 DE의 下部와 無差別曲線  $I''I''$ 의 上부가 겹치는 곳)을 상정할 수 있다. 最終均衡點이 이 領域內部에서 실현되는 한에서는 貿易은 厚生을增進한다.

A, B國의 동맹결성 이전에 만약 B國과 C國이 大國이고 모두 X財와 Y財를 生產하면서 禁止的 高率關稅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래서 交易은 A國과 C國 사이에서 C國의 國內價格比率과 같은 相對價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小國 A國과 大國 B國이 關稅同盟을 結成하여 A國이 B國과 무역하게 되어 C國은 전혀 損失이 없는 데에 반하여 B國은 X財와 Y財를 계속 生產하면서 아무런 利益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貿易利益의 全部는, 關稅同盟의 結成前後에 모두 A國에 歸屬하게 된다. 그리고 A國의 貿易轉換이 A國의 厚生을增進한다면 그것은 世界全體의 厚生을增加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다음으로 關稅의 引下 程度에 따른 厚生의 變化가 어떤 하겠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이 점에 관하여는 Lipsey 와 Lancaster 는, 關稅同盟 結成後에 많은 關稅의 變動이 있게 되고 이러한 多數 關稅의 變動은 個別 財貨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을 變動시키게 되므로 Meade 에서와 같이 固定된 需要供給曲線에 기초한 限界的 關稅引下의 厚生效果를 關稅同盟의 경우에 一般化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그들은 厚生은 關稅의 特惠의 完全撤廢에 의해 서보다 關稅의 小幅的 引下에 의하여 더욱增進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最適條件을妨害하는 모든 要因 가운데서 오직 關稅만이 不變하다고假定하고, 이兩者는 關稅率의 變化가一國의 經濟를 어떤 方向으로 그리고 어떤 정도로 變化시킬 것인가를 分析한다.

世界各國이 모두 관세없는 自由貿易을 행하고 있을 때는 財貨間의 限界轉換率과 限界代替率을 國際的으로一致시킴으로써 生產과 交換의 最適狀態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두 나라가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서로 관세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域外國에 대하여 關稅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어차피 Pareto 最適狀態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며, 最適條件를 가운데 하나가 滿足되지 못할 때(즉 이 경우 域外國에 대한 관세부과) 다른 最適條件(예컨대 關稅同盟國間의 關稅撤廢)이 滿足되는 것이 많을수록 파레토 最適에 接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 餘他의 최적조건들이 滿足되지 않아야 次善에 接近할 수 있다는 Second Best理論과 密接한 관련을 갖고 있다. Meade처럼 貿易擴大와 縮小를 결과하는 關稅同盟의 厚生效果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25) *Ibid.*, p 46

A國은 小國이며 Z商品에 特化하여 輸出하고 B國으로부터 X財를 輸入하고 C國으로부터 Y財를 輸入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X財와 Y財의 Z財와의 交換比率이 國際市場에서 A國의 關稅賦課로 變更되지 아니하며 또한 A國에서는 X財와 Y財를 生產할 만큼 높은 保護를 행하지 아니하고 B國은 Y財를 그리고 C國은 X財를 각각 生產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그 밖에 A國의 社會無差別曲線이 A國의 同一한 居住者들의 厚生函數와 같은 形態를 가지고 있고 또한 政府가 關稅收入을 전부 소비자에게 환불한다고 가정할 때 A國이 Y財 輸入에 關稅를 賦課하고 國內財 Z에는 無稅로 하면 X財 輸入에 얼마만큼의 關稅를 賦課하면 A國의 厚生을 極大化할 것인가? 이는 앞의 (1), (2), (3)式들을 다시 부연한 것이다.

$P_x$  와  $P_y$ 를 각각 Z財로 나타낸 X財와 Y財의 價格이라 하고 X財와 Y財에 부과되는 關稅率을 각각  $t_x-1$ ,  $t_y-1$ 이라 하면

$$A\text{國의 社會厚生函數} \quad u=u(x, y, z) \quad (1)$$

$$A\text{國의 需要均衡條件} \quad \left\{ \begin{array}{l} \frac{\partial u}{\partial x} = \frac{\partial u}{\partial z} P_x t_x \\ \frac{\partial u}{\partial y} = \frac{\partial u}{\partial z} P_y t_y \end{array} \right. \quad (2)$$

$$\left. \begin{array}{l} \frac{\partial u}{\partial y} = \frac{\partial u}{\partial z} P_y t_y \end{array} \right. \quad (3)$$

$$A\text{國의 國際收支均衡條件} \quad X \cdot P_x + Y \cdot P_y + Z = C \quad (4)$$

( $X \cdot P_x + Y \cdot P_y$ =輸入額,  $Z$ =生額額中 國內消費額,  $C$ =國內生產總額)

$P_x$ ,  $P_y$ ,  $C$  등이 일정하면  $t_x$ ,  $t_y$ 에 대한 解를 찾 것이다.

$$X = f(t_x, t_y) \quad (5)$$

$$Y = g(t_x, t_y) \quad (6)$$

$$Z = h(t_x, t_y) \quad (7)$$

$t_y$ 는 1보다 크게 一定하게 두고  $t_x$ 가 變化할 때 A國의 厚生이 變化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1)과 (5), (6), (7)에서 보면

$$\frac{\partial u}{\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x} \cdot \frac{\partial x}{\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frac{\partial z}{\partial t_x} \quad (8)$$

(2), (3)을 (8)에 넣으면

$$\begin{aligned} \frac{\partial u}{\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P_x \cdot t_x \cdot \frac{\partial x}{\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P_y \cdot t_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cdot \frac{\partial z}{\partial t_x} \\ &= \frac{\partial u}{\partial z} \left( P_x \cdot t_x \cdot \frac{\partial x}{\partial t_x} + P_y \cdot t_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 \frac{\partial z}{\partial t_x} \right) \end{aligned} \quad (9)$$

(4)를  $t_x$ 에 관하여 미분하면

$$\begin{aligned} P_x \cdot \frac{\partial x}{\partial t_x} + P_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 \frac{\partial z}{\partial t_x} &= 0 \\ P_x \cdot \frac{\partial x}{\partial t_x} + P_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 -\frac{\partial z}{\partial t_x} \end{aligned} \quad (10)$$

(10)을 (9)에 넣으면

$$\begin{aligned}\frac{\partial u}{\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left( P_x t_x \frac{\partial x}{\partial t_x} + P_y t_y \frac{\partial y}{\partial t_x} - P_x \frac{\partial x}{\partial t_x} - P_y \frac{\partial y}{\partial t_x} \right) \\ &= \frac{\partial u}{\partial z} \left[ P_x \frac{\partial x}{\partial t_x} (t_x - 1) + P_y \frac{\partial y}{\partial t_x} (t_y - 1) \right]\end{aligned}\quad (11)$$

Y財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X財는 無稅이면 이 (11)式은 다음과 같아 된다.

$$\frac{\partial u}{\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left[ P_y \cdot \frac{\partial y}{\partial t_x} (t_y - 1) \right] \quad (12)$$

(12)式에서  $\frac{\partial u}{\partial t_x}$ 는  $\frac{\partial y}{\partial t_x}$ 와 같은 부호를 가진다. X財에 대하여 限界的인 關稅를 부과할 때 그것이 Y財의 輸入을 增加시키면 厚生도 增進될 것이며, Y財의 輸入에 變化가 없으면 厚生도 不變할 것이고, Y財의 輸入이 減少하면 厚生이 減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X財에 관세가 부과될 때 Y財의 輸入이 減少한다면 X財最適關稅는 補助金이며, Y財의 輸入에 아무런 變動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면 X財最適關稅는 0이며, X財에 대한 關稅賦課가 Y財의 輸入을 增加시킨다면 X財의 最適關稅는 正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번에는 X財와 Y財에 대하여 一律的으로 같은 關稅率이 부과된다면 관세율을  $T$ 라 할 때  $t_x = t_y = T$ 이고 (11)式은 다음과 같아 된다.

$$\frac{\partial u}{\partial t_x} = \frac{\partial u}{\partial z} (T-1) \left( P_x \frac{\partial x}{\partial T} + P_y \frac{\partial y}{\partial T} \right) \quad (13)$$

이를 (10)式에 代入하면 다음의 (14)式이 된다.

$$\frac{\partial u}{\partial t_x} = - \left[ \frac{\partial u}{\partial z} \cdot \frac{\partial z}{\partial t_x} (T-1) \right] \quad (14)$$

이 (14)式에서 보면  $\frac{\partial u}{\partial t_x}$ 는  $\frac{\partial z}{\partial t_x}$ 와 反對의 부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式으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X財에 대한 限界的인 關稅引上이 Z財의 消費를 減少시키면, 厚生이 增加하며, 그것이 Z財의 消費에 變動을 일으키지 않으면 厚生도 不變이고, Z財의 消費를 늘린다면 厚生을 減退시킬 것이다.

따라서 X財 關稅의 引上이 Z財의 消費를 감소시키면 X財의 最適關稅는 Y財의 所定關稅를 초과하며, X財 關稅와 Z財消費 사이에 相關이 없다면 X財最適關稅와 所定의 Y財 關稅는 一致할 것이고, X財 關稅引上이 Z財消費增加를 誘發하는 경우에는 X財最適關稅는 所定의 Y財 關稅보다 작다. X財의 關稅引上이 Y財와 Z財의 消費增加를 誘發하는 경우에는 X財最適關稅는 0보다는 크지만 所定의 Y財 關稅보다는 낮다.

以上의 추론에서 당초에 X財, Y財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던 A國이 B國과 關稅同盟을 결성하여 X財는 無關稅로 그리고 Y財는 關稅附로 輸入된다고 할 때 이러한 關稅同盟이 가

져오는 效果를 살펴보자.

첫째, X財 關稅引上이 Y財消費를 減少시키는 消費構造에서는 X財 最適關稅은 實상 補助金이다. 따라서 이 때의 關稅同盟은 A國의 厚生을 增進시킨다.

둘째, X財에 대한 關稅가 變更되어도 Y財의 消費를 變更시키지 아니하는 狀況에서는 X財의 最適關稅는 0이다. 이 때 關稅同盟은 A國의 厚生을 增進한다. 또한 이 때는 次善의 수준까지 厚生을 증진한다.

세째, X財 關稅의 變更이 Z財消費에 變動을 가져오지 아니할 때 X財의 最適關稅는 Y財 關稅와 같다. 이 때 X財 관세를 면제하는 關稅同盟은 A國의 厚生을 減少시킨다. 더우기 이同盟은 이미 설정된 次善의 最適狀態를攪亂한다.

네째, X財 關稅引上이 Z財消費를 減少시키는 경우 X財의 最適關稅는 所定의 Y財 關稅를凌駕한다. 따라서 關稅同盟은 A國의 厚生을 減少시킨다.

다섯째, X財 關稅引上이 Y財 및 Z財兩者的消費를 誘發한다면 X財의 最適關稅는 0보다는 크고 所定의 Y財 關稅보다는 작다. 이 때에는 關稅同盟이 厚生에 미치는 效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때 X財 關稅가 段階別로 차례차례 除去된다고 가정하면, 최초의 관세 引下는 厚生을 增進하고 最終段階의 引下는 厚生을 減少시킬 것이다.

X財 關稅의 完全撤廢의 厚生效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關稅를 약간만 引下하면 厚生이 增進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大幅的인 關稅引下는 厚生을 增進시킬 수도 있고 減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關稅의 差別的, 部分的 引下가 完全한 차별적 철폐보다도 厚生을 더 증진한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다른 事情은 모두 不變이고 關稅만이 可變的일 때 이 關稅에 대하여 次善의 厚生이 在在한다고 假定한다면 關稅水準에 따라 이 次善을 벗어나든가 次善의 逆方向으로 가든가 아니면 次善의 方向으로 厚生을 变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 關稅率의 小幅的 變動이 厚生을 더 增進시킬 것이다.

## V. 補論

以上에서 關稅同盟의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에 기인하는 生產效果와 消費效果에 관하여 그 동안 提起된 代表的 勞作들을 中心으로 論議하였다. 生產效果에 있어서는 關聯國들의 費用函數, 生產構造, 經濟規模, 供給彈力性, 關稅率의 水準, 生產費隔差가 그 主要決定要因으로 지목 되었고 消費效果에 있어서는 代替性과 補完性, 需要의 彈力性, 相對價格比率, 交易

26) R.G. Lipsey and K.J. Lancaster,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4, pp. 19~21

條件, 社會效用函數, 關稅水準등이 主要 決定要因으로 지칭되었다.

上記 諸要因들은 매우 複雜하게 相互關聯되어 生產과 消費·厚生에 관한 多樣한 結論들을 導出할 수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몇몇은 아직도 더 깊은 研究를 要求하고 있다.

이 章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하기 보다도 지금까지의 論議 그 自體에 매우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몇 가지 事項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關稅同盟의 生產效果가 커지기 위하여는 關稅同盟 加盟國들의 產業構造가 极히 비슷하면서 生產費 構造에는 差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萬若에 同盟國들의 生產形態는 酷似하나 그 중 어느 一國이 모든 部門에서 가장 저렴한 生產費로 생산한다고 하면 關稅同盟의 利益은 그 特定國에 集中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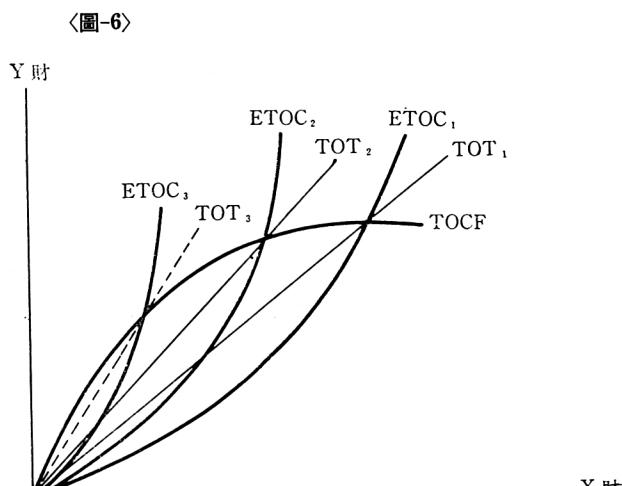
이러한 경우에 關稅同盟이 結成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舉論되지 않은 換率調整問題가 擡頭하게 된다. 즉 適正換率이 設定되지 않으면 國際收支均衡과 失業惡化로 關稅同盟은 結成되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完全彈力의 아닌 供給曲線下의 關稅同盟은 域外國과의 貿易에 있어 交易條件改善效果를 가져올 可能性이 있는 것은勿論이다. 그러나 萬若에 關稅同盟의 結果로 生產性이 向上되어 所得增加가 發生하여 輸入財의 需要가 增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域外國에 대하여 交易條件이 惡化되는 경우가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關稅同盟의 交易條件效果는 所得效果를 포함한 多樣한 경우를 想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交易條件改善과 厚生變動과의 관계도 흥미있는 문제가 된다. 關稅同盟을 結成하여 共通對外關稅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大體로 交易條件은 改善되는 傾向을 가질 것이다.

〈圖-6〉에서 ETOC<sub>1</sub>, ETOC<sub>2</sub>, ETOC<sub>3</sub>은 각각 關稅同盟을 結成한 2個國의 Excess Trade Offer Curve 인데, ETOC<sub>1</sub>은 兩國이 서로 自由貿易을 행하는 경우이고 ETOC<sub>2</sub>는 兩國의 同盟結成前 貿易制限을 가하던 때의 초과 오퍼케어브이며 ETOC<sub>3</sub>은 兩國이 域外國에 대하여 特定共通關稅를 賦課하였을 때의 초과 오퍼케어브를 나타내며 TOCF는 域外國의 오퍼케어브이다. 同盟結成과 對外共通關稅賦課로 ETOC<sub>2</sub>가 ET<sub>OC</sub><sub>3</sub>로 移動하면서 域外國에 대한 交易條件은 改善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域外國이 大國이고 따



라서  $TOC_F$  가 無限彈力의이면 交易條件의 改善은 없고 關稅同盟의 厚生은 오히려 減少할 것이다. 反面에 域外國의 오퍼곡선이 無限彈力의이 아니라면 이 關稅同盟은 交易條件를 改善할 수 있으나 關稅同盟 全體의 厚生은 減少할 수도 있고 增加할 수도 있다.

가령 最適關稅理論에 따라  $ETOC_3$  가, 이 同盟의 貿易無差別曲線이  $TOC_F$  와 접하는 점(그림에는 없음), 以外에서,  $TOC_F$  와 만나게 되면  $ETOC_2$  에 비하여 厚生이 감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關稅同盟의 厚生效果를 分析함에 있어 加盟國의 厚生 뿐만 아니라 世界全體의 厚生의 變化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關稅同盟의 規模가 커질수록 世界全體의 厚生이 增加하며, 關稅同盟結成 以前의 關稅率이 높을수록, 同盟結成 以後의 共通關稅가 낮을수록, 그리고 域外國의 關稅가 낮을수록 世界全體의 厚生이 增加한다. 그리고 域外國의 交易條件과 貿易量을 不變하게 하는 어떤 補償的共通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러한 關稅同盟은 世界厚生을 增進할 것이다. 다만 世界全體의 厚生變化를 分析하는 데에는 嚴密한 假定下에서의 一般均衡理論을 援用해야 할 것이므로 別途의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28)</sup>

끝으로 關稅同盟의 動態的 效果를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關稅同盟의 生產效果와 消費效果를 靜態의으로 分析하는 限에서는 그 效果가 极히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 점은 P.J. Verdoorn, H.G. Johnson, B. Balass 등도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關稅가 철폐됨으로써 市場이 넓어지고 既存市場構造가 解體됨에 따라 產業의 存續과 擴大가 要求된다. 특히 國家의 產業政策이 限界生產業體의 維持라는 次元에서 效率的企業의 育成으로 轉換되지 않을 수 없고 獨寡占產業의 國內基盤은 봉괴되기 쉽다. 關稅撤廢에 따른 競爭의 激化는 結局은 個別經濟의 效率化를 強要하게 되며 市場의 擴大와 效率화의 促進은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게 된다. 生產性向上과 所得增加 및 需要의 開發과 擴大는 長期的으로 巨大한 動態的 利得을 結果할 것이며 이것이 關稅同盟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開發途上國의 立場으로 보면, 极심한 外換不足에 처하여 經濟開發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貿易創出效果는 勿論이고 貿易轉換效果도 所望스러울 수가 있다. 특히 生產要素에 대한 最小限의 生存的 報酬가 支給될 수 있는 한에서는 수요가 확립된 消費財 등의 貿易轉換은 外換의 節約과 동시에 生產習得過程을 短縮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關稅同盟의 이와 같은 長期的 動態的效果에 있어 특히 注目을 끄는 것은 費用漸減產業의 경우 그 立地問題이다. 關稅同盟의 經濟的 利得이 커지기 위하여는 加盟國들의 所得

27) J. Vanek,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conomic Policy*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62), Chap. 18

28) J. Vanek, *General Equilibrium of International Discrimin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Chaps. V~VIII.

29) T. Scitovsky,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7), Chap. III "Economies of Scale, Competi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水準, 發展段階, 需要構造, 生產構造 등이 비슷할 것이 要望되는데 이 때 경쟁의 격화로 生產性의 向上이 促進되고 더우기 需要의 增加가 同伴될 때 費用漸減產業은 加盟國들 사이에서 관심의 對象이 된다. 이러한 產業은 產業構造가 비슷한 加盟國들 가운데 어디에 立地하든, 個別國家들이 모두 이 產業을 保有하는 것보다는, 輝澈 큰 利益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需要가 크게 擴張될 것으로 예상되는 費用漸減產業들은 競爭의 激化에 의하여 比較優位를 喪失하여 도태되기를 기다릴 수 없고 同盟의 加盟國들의 合意에 따라 加盟國別로 割當하는 分業方式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漸增生產條件下에서의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分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기 위하여, 關稅同盟 또는 其他 經濟統合 結成時에, 加盟國別로 特定產業을 合意에 따라 割當하는 必要性과도 좋은 對照를 보이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論議에 있어서 오직 關稅만이 貿易制限의 手段으로 남아 있고 그 밖에는 어떠한 貿易制限措置가 없는 것으로 假定하고 그런 假定下에서 關稅同盟에 따른 域內關稅免除와 對外共通關稅 賦課의 效果를 分析하였다. 그러나 가령 關稅 以外에도 外換市場, 換率, 金融措置, 數量制限, 기타 非關稅障壁 등이 嚴格히 實施되고 있는 가운데서 關稅同盟이 結成되어 이를 制限措置들을 殘存시키면서 關稅만을 撤廢하는 경우에는 이 關稅同盟은 아무런 效果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關稅同盟效果의 分析은 매우 制限的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